제335회 임시회

2014.10.14.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10월 02일

○ 회부일자: 2014년 10월 07일

3.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의원 제도가 2014.7.1.부터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교육의원'을 삭제·변경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2조)

1) 제2조제1항제2호의「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을 삭제하고,「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으로 변경

2) 제2조제3항「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삭제

나.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임기 정비(안 제4조)

1) 제4조제2항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교육의원’을 삭제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2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 2명”을 삭제하여 교육감소속 공무원 2명을 4명(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으로 추가 조정하였고,

○ 제4조제2항의 교육의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이 밖에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2.26.] [법률 제10046호, 2010.2.26., 일부개정]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2.26.]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절 교육의원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조(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부칙 <제10046호, 2010.2.26.>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

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10.28]